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



전북지방환경청

# 목차

- I**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
- II**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 III**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IV** 승인기관의 역할
- V** 사업자의 준수사항

# I.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

# 1) 도입목적 및 정의

## ■ 도입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도모  
[1981년 최초 국내 도입·시행]

## ■ 제도정의

개발사업을 위한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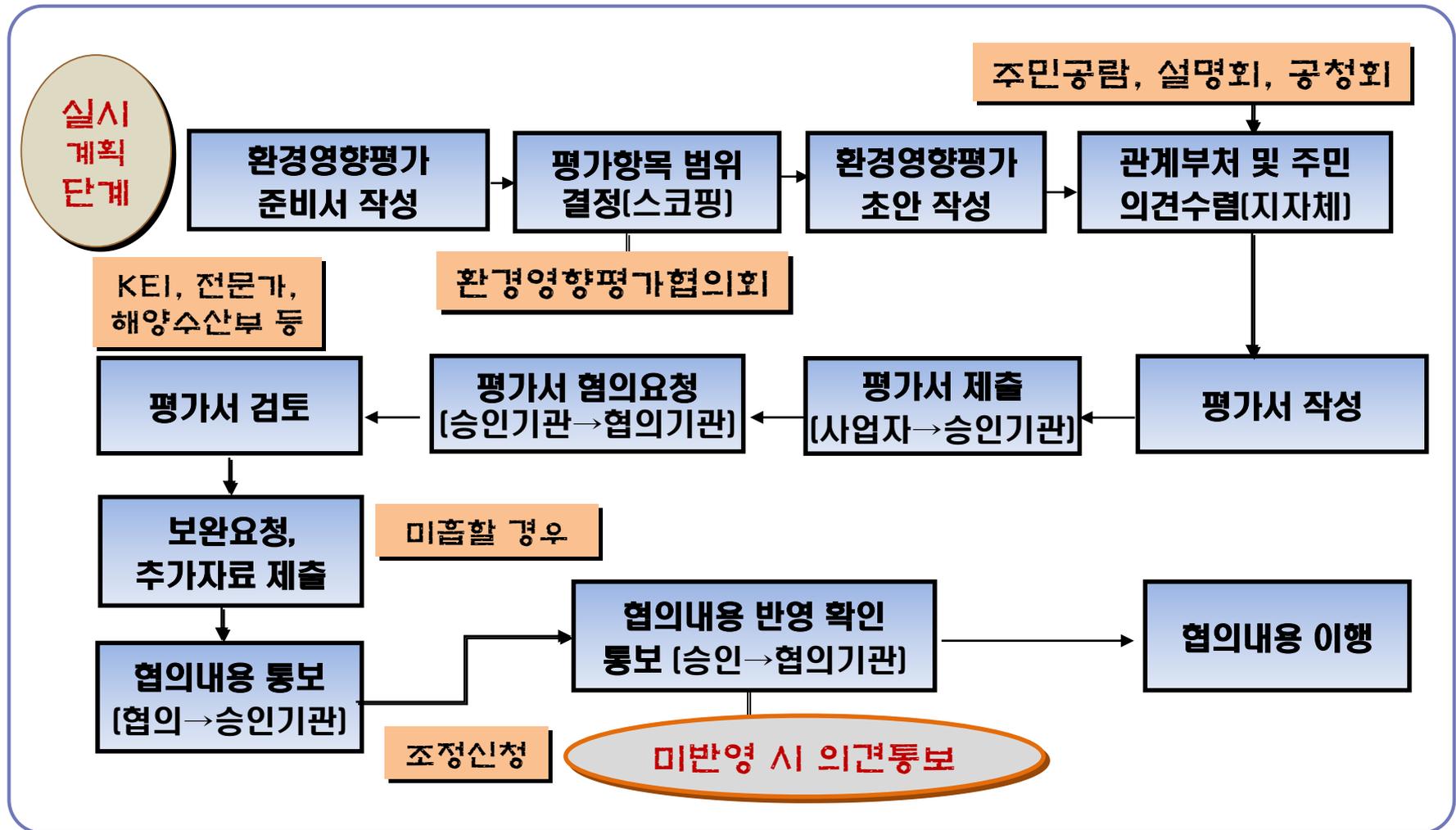
[종류] ① 전략환경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2)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 종류

<p>전략환경영향평가</p>	<p>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b>상위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b> 환경영향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등 해당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분석 등</li> </ul>
<p>환경영향평가</p>	<p>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b>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b> 환경영향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등</li> </ul>
<p>소규모 환경영향평가</p>	<p>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시행되는 <b>소규모 개발사업 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절차 간소화 : 평가준비서, 항목·범위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협의 생략</li> </ul>

### 3) 환경영향평가 절차



## 4) 기본원칙

-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경제적 · 기술적 실행가능 범위에서 과학적 조사예측결과를 근거로 **환경보전방안과 대안 마련**
-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련 정보제공**
- 환경영향평가결과는 지역주민과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
- 특정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등에 대한 **누적영향 고려**
-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 미치는 **사회 · 경제적 영향 고려(2018.6.12. 개정)**

## 5) 평가항목

###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 ·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 계획의 적정성(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 보전 측면, 생활환경의 안정성 측면)

### ■ 환경영향평가 : 6개 분야 21개 항목

대기환경(4)	수 환 경(3)	토지환경(3)	자연생태환경(2)	생활환경(6)	사회 · 경제 환경(3)
기 상 대기질 악 취 온실가스	수질(지표, 지하) 수리 · 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 양 지형 · 지질	동 ·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 진동 위락 · 경관 위생 · 공중보건 전파장애 일조장애	인 구 주 거 산 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항목 중 자연환경자산, 기상, 온실가스, 수리 · 수문, 위생 · 공중보건 등을 제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보다 **간소화 형태로 운영**

## 6) 제도기능 및 효과

### ■ 제도 기능

#### ● 정보제공

- : 의사결정권자에게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 :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 합의형성

- : 계획수립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설득 등 **갈등요인 조정**

#### ● 유도기능

- : 계획입안자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규제기준 준수 노력 유도

#### ● 규제기능

- : 협의기준 미 준수시 공사중지 등 제재조치 등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 6) 제도기능 및 효과

### ■ 제도 효과

#### ●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환경정책수단**

- 계획 입안이나 사업 실시에 즈음해서 해당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마련시행  
[환경기초시설 확충, 녹지의 원형보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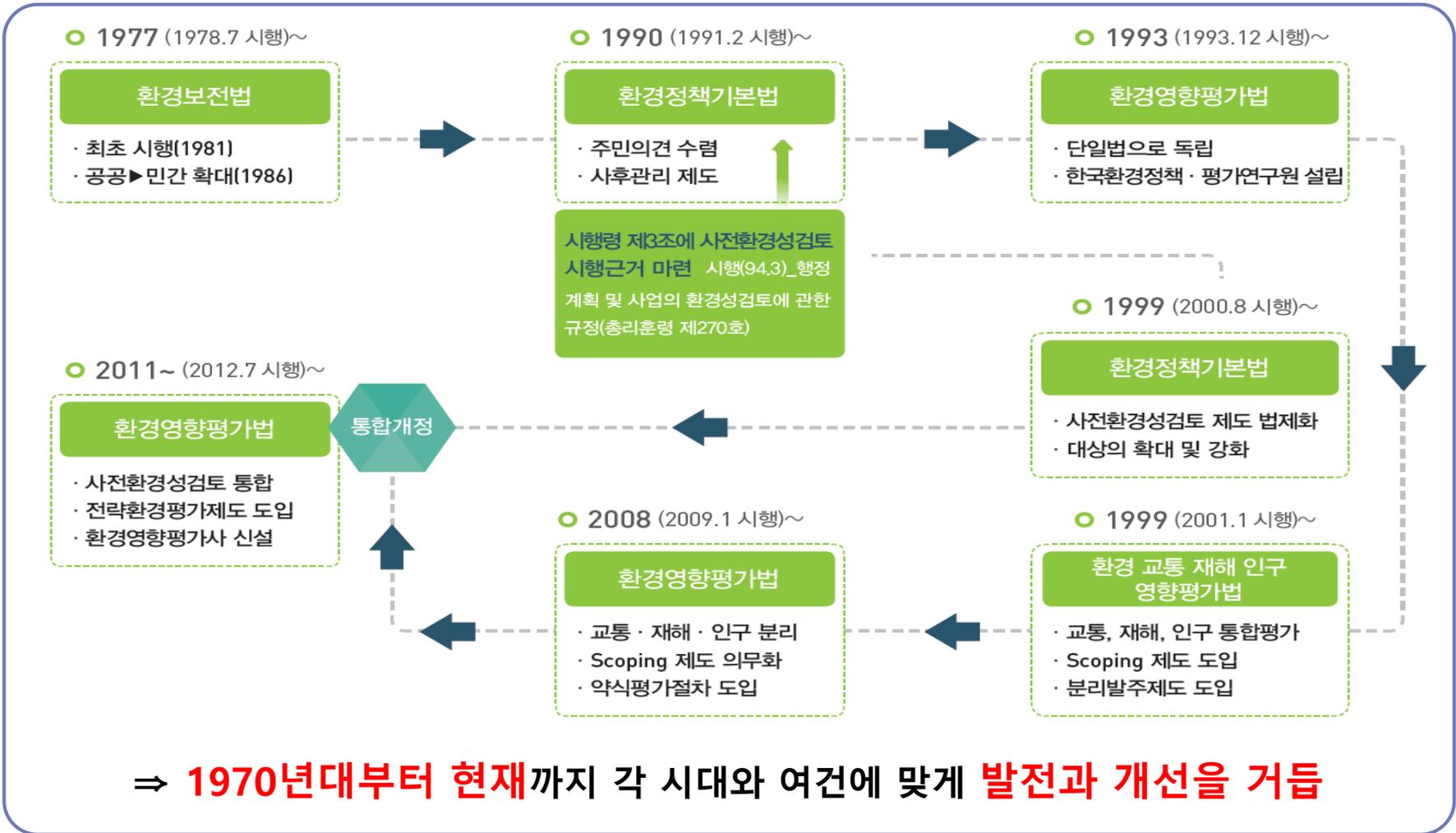
#### ● **주민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개최 등 긴밀한 쌍방향적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설득 내지는 합의 형성 촉진 기능 수행



#### ● 환경영향 예측·분석 기법 발전 및 **환경오염저감 환경기술개발 촉진**

# 7) 제도변천과정



⇒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와 여건에 맞게 발전과 개선을 거듭

## II. 환경영향평가법 주요개정 내용

#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주요내용

■ '17.11.28 공포('18.11.29 시행)

- 원상복구 및 과징금 부과, 소규모평가 변경협의,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 평가서 재평가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평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비고
과징금 부과 [법 제40조의2]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부과 절차 마련	제도신설
소규모평가 변경협의 [법 제46조의2]	소규모평가 변경협의 사유 구체화	제도신설
과태료 [법 제76조]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과태료 상향

#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평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비고
주민의견 재수렴 [법 제15조, 제26조]	의견수렴 절차상의 흠 등 재수렴 사유, 신청기간, 절차, 최소 신청인원 등 구체화	제도신설
거짓평가서 재평가 [법 제41조]	재평가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	제도신설
재대행승인 [법 제56조]	재대행 승인 신청 서류 및 절차	제도신설
위반사실공표 [법 제66조의2]	공표 내용 및 방법	제도신설

#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주요내용

## ■ '18.6.12 공포('18.12.13 시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사업착공 통보 내용 공개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평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비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법 제36조제3항]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	제도신설
사업착공 등의 통보 [법 제37조제2항]	착공 통보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	제도신설

- 환경영향평가 원칙 추가(5개원칙 → 6개원칙, 법 제4조)

※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

- 평가 대상지역 外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 확대 근거 마련

·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 환경훼손,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등, 법 제13조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사항으로 거짓·부실 검토에 관한 사항 추가**  
[제3조2호 신설]
  -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제6조의3 신설)**
  -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둠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영 제6조의3)

※ 법률 및 환경전문가, 환경관련 협회·단체·연구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 인적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 마련 [제23조제4항, 제48조제5항 신설]
-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내용의 공개[제55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검토내용을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시하여야 함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사업착공 통보 등의 공개(제55조의4 신설)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착공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평가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사업착공통보 : [현행] 승인기관에 통보 → [개정] 승인기관통보 + **통보내용 지역주민 공개**

### ■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제56조의2 신설)

- 원상복구 명령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함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함

· 협의내용 이행강제력: [현행] 공사중지명령 → [개정] 공사중지명령 + **원상복구명령**  
+ **원상복구명령에 같음하는 과징금 부과**

※ (입법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과징금)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3조의2 신설)

- 법 46조의2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필요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함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3.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역이 5퍼센트 초과 하는 경우
5.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협의 사유와 연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 참고사항(환경영향평가와 비교)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대상
  -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 환경영향평가서 변경협의 대상
  -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규모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부지면적이 1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역이 5퍼센트 초과 하는 경우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제78조 별표 10 개정)

- 조치명령 미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이행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과태료의 부과기준, 만원〉

개별기준 위반행위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
라목	〈법 제36조제1항 위반〉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500 (경미 300) (중요 500)	700 (경미 300) (중요 500)	1,000 (경미 300) (중요 500)
자목·차목	〈법 제40조 제1항 또는 제4항 위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치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미이행	2,000 (1,000)	3,500 (1,500)	5,000 (2,000)
카목	〈법 제41조 제3항 위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2,000 (1,000)	3,500 (1,500)	5,000 (2,000)
타목	〈법 제47조 제1항 위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 전 공사를 한 경우	200 (신설)	300 (신설)	500 (신설)
파목	〈법 제49조 제2항 위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명령미이행	500 (300)	700 (400)	1,000 (500)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기간 산정시 “토요일” 미산입(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32조, 제36조, 제38조, 제50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리기간 계산시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처리기간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
    - ※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협의의견 통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처리기간 산정시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음
    - ※ 기간산정 : (현행) 공휴일 미산입 → (개정)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시행 등을 반영한 비교 조문 정비 (별표4 비교7, 비교11, 비교11의2)**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7.11.28)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교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문언 정비
    -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변경협의)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별표 4 비교 제7호 전단 중 “지역 중” 을 “지역(가목을 제외한다) 중” 으로 하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 산정에서 도시지역(가목) 예외
- **비교 제11호 본문 중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 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 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의 법적 충돌 회피**
  - ※ 기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변경시 변경협의 대상(안 제63조의2 신설에 따라 현행 괄호 부분 삭제)
- **비교 제11호 다목 및 제12호 다목 중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를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 로 함**
  - ※ 전단과 의미가 중복되는 괄호부분 삭제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 추가 (별표4 비교4)

- 별표4의 비교 제4호 마목에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을 추가

###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유예** [별표5]

- 별표5 제3호가목1) 표의 총괄의 필요일원란 중 “2020.1.1.부터” 를 “2020.7.1.부터” 로, “2019.12.31.까지” 를 “2020.6.30.까지” 로 함

### ■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 제55조제2항제7호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일정농도 미만일 경우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개선

###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재개의 통보의무** 추가  
(제20조, 법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
-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 마련(제7조의2, 제12조의2,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법 제15조의3항 및 제2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 **[사유]** 공람기간 미준수, 설명회·공청회 미개최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른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 **[절차]** 재수렴 사유에 해당하고 주민 30명 이상이 재수렴을 신청한 경우 등 요건 만족시, 주민의견 재수렴 의무화

※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전략평가), 사업자(환경평가)에게 재수렴 신청서 제출

###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거짓 평가서 재평가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

[제22조의 2, 법 제4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

-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자와 재평가 기관이 협의한 사항을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로 정함

####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신청서류 및 승인 절차 마련

[제26조의2 및 별지11호의2 서식, 법 제5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 [서류] 업무개요, 평가대상 규모 · 금액 · 기술인력 등 내역서
- [절차]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1회 연장 가능]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로 정함

###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실 공표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  
 (제37조의 2,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 **[내용]** 대표자 및 사업장 명칭,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 **[방법]**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해당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관보, 신문 등을 이용해 공표
- **용어정비 및 서식 신설 등**(제15조, 제26조, 별표1, 별지 제3호의2서식, 제8호서식, 제11호의2서식 등)
  - 안전펜스를 안전울타리로, 하도급을 재대행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의견 재수렴 신청서 및 재대행 계약 승인 신청서 신설
  - 환경영향평가사업 착공등의 통보서 공사 재개 항목 추가

## 4) 환경영향평가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및 위반시 벌칙 신설
  - **[제재강화]** 현행 자격증 대여 금지 → **대여받는 행위와 알선행위**까지 제재범위를 확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내용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제40조의2(과징금)를 준용토록 함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산지관리법 적용대상 합리화**
    -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 현행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허가, 토석채취허가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조성**을 추가
- ※ 채석단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과 다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분류체계를 일원화

## 5) 기타 제도 안내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지침 개정('19.4.2 시행)

#### ● 환경영향평가등 정보의 등록·공개 방법 개선('19.10.2 시행)

- **[기존]** 환경영향평가등(평가서, 측정자료 등) 접수 후 시스템 입력 →  
**[변경]** 환경영향평가등(평가서, 측정자료 등) **사전 시스템 입력 후 접수**

####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내용의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등 검토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

#### ● 비공개 범위 및 사유 구체적 명시

-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범위 및 사유 구체화(항목, 내용 등)

## III.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제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이의 확인 감독을 포함**하는 개념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 공사·운영시 나타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주변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 관리**

**+ 사후환경영향조사**

## 2) 협의내용의 개념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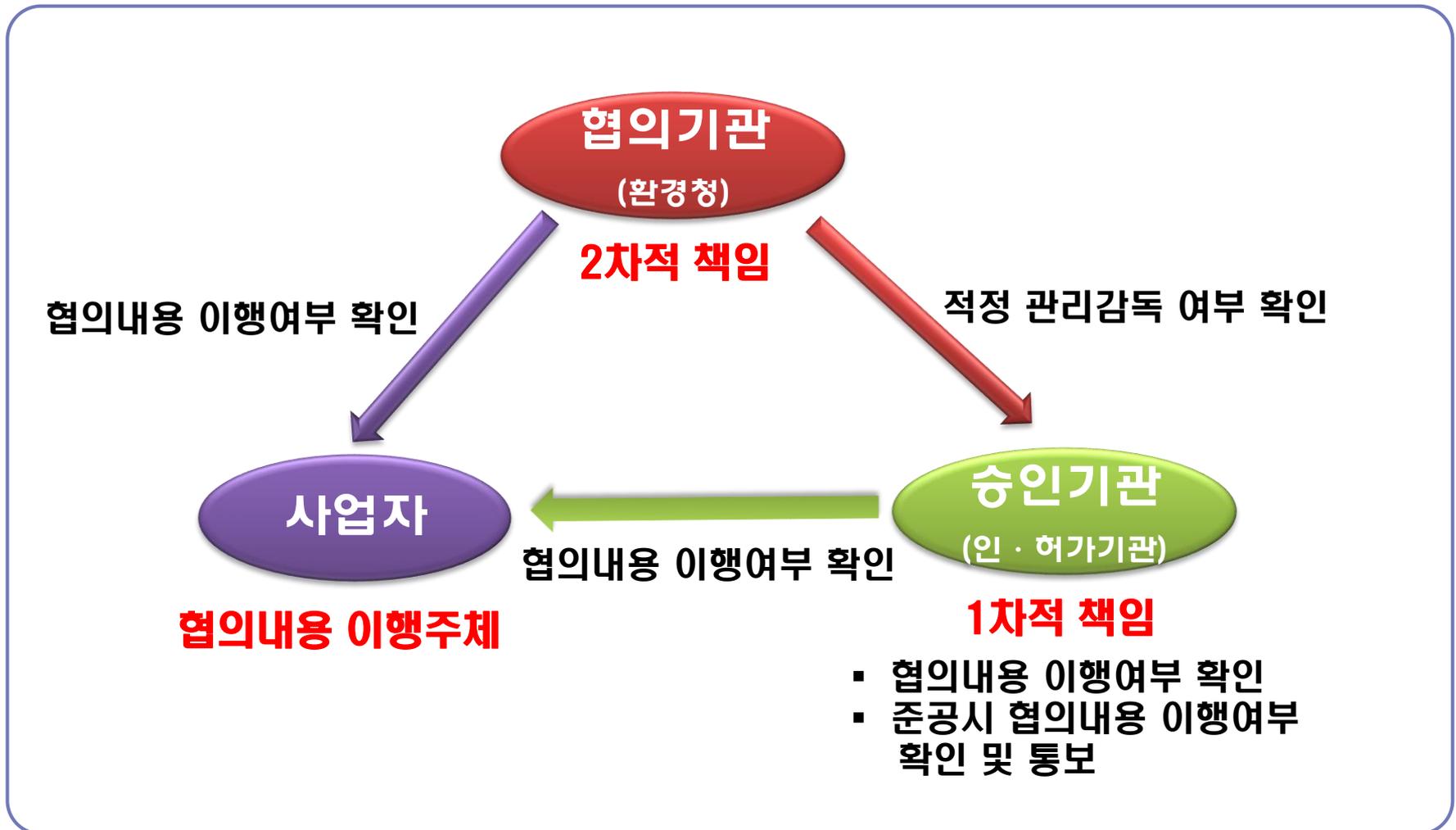
### ■ 협의내용의 개념

- 협의기관(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완료 한 후 승인기관에 통보하는 내용
  - 협의기관에서 제시한 추가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및 **추가자료의 환경보전방안**을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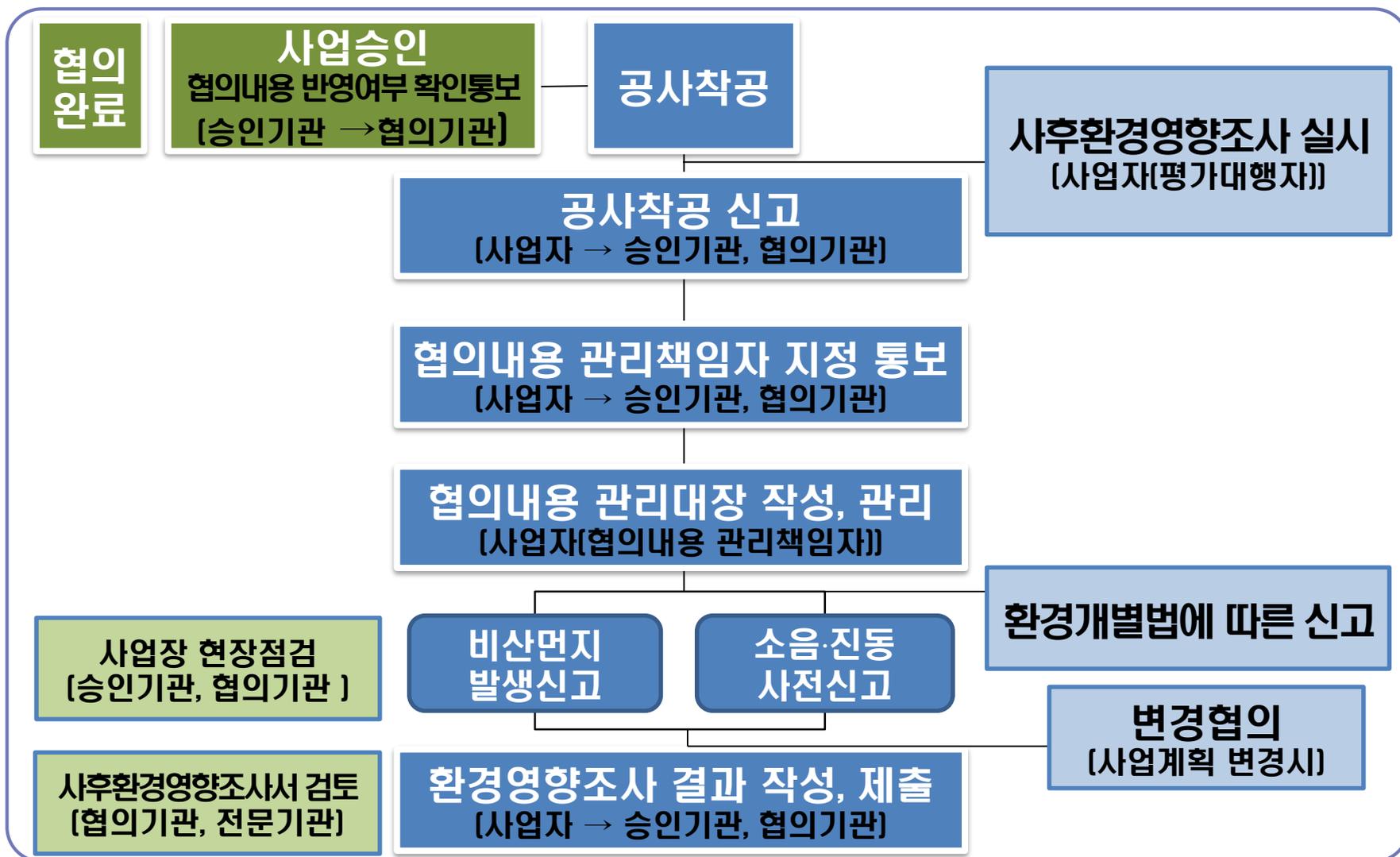
### ■ 협의내용의 관리

- **[승인기관]** 협의기관에서 통보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 승인(인·허가 등)시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장 현지조사 수행 및 협의내용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협의내용 적정 관리
- **[사업자]**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적정 이행할 의무**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공사현장에 관리대장 작성·비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조사결과 주변 환경피해방지 조치
  - 환경기준 초과 등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시 적절한 저감대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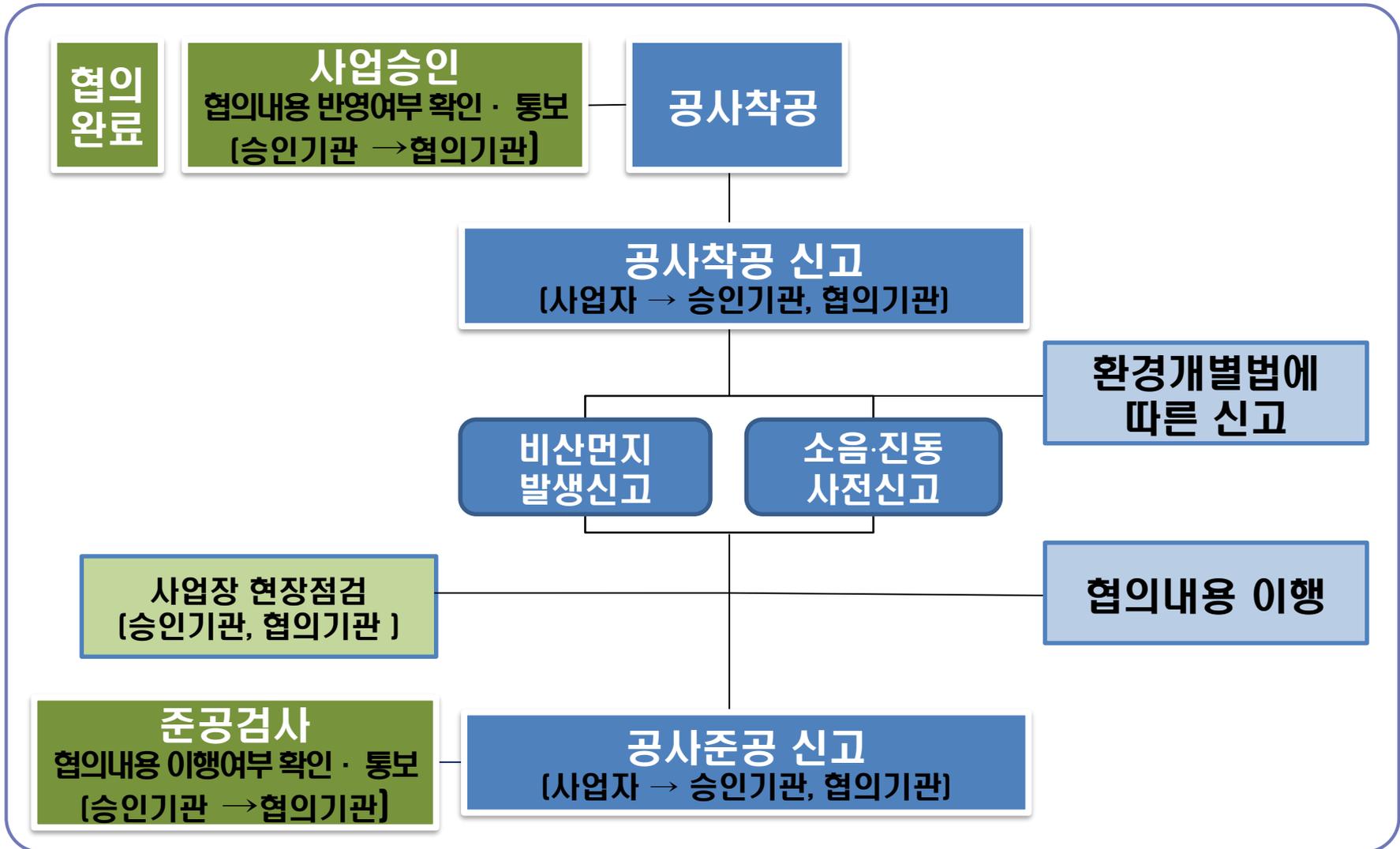
### 3) 기관별 역할



## 4)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흐름도



##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흐름도



## IV. 승인기관의 역할

## 1) 총 괄

### ■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법 제30조, 제46조)

- 협의내용을 해당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승인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

**[사업계획 승인, 확정 후 30일 이내]**

### ■ 사전공사 확인시 공사중지 명령(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47조)

- 협의절차 완료 전에 사업계획 승인 금지
- 사전공사 확인시 공사중지 명령

### ■ 협의내용의 관리 · 감독 및 조치명령(법 제39조, 제40조, 제49조)

- 사업자 협의내용 미이행시 협의내용 이행조치, 공사중지 등 필요조치 시행
-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다음해 1월 31일**)
- 사업 준공검사시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 2) 협의내용 관리 · 감독(사후관리)

### ■ 협의내용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수립시기 : 매년 초(가급적 1월말까지)
- 점검대상 : 공사 중인 사업장 또는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 등
  -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사업지역의 특성, 민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

### ■ 조사준비

-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 주요 환경영향요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 사전 파악

### ■ 주요 조사내용

-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저감시설 설치계획, 예산 등이 실시설계 등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여부
-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의 적절한 이행여부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 및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등 제반 의무사항의 적절한 준수여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 이행여부
- 협의내용에서 별도로 협의토록 한 사항의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 등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기준 준수여부 등)

### 3)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

- **현지도** : 협의내용의 미이행 사항 중 경미하여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환경영향 정도, 환경오염과 직접 관계여부, 단시일 내 조치 가능여부, 고의성/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이행조치** : 경미한 사항 외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과, 기 현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조치기한을 정하여 이행조치 명령 (법 제40조제1항)
  - ※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조치 명령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속하게 지방환경관서에 과태료 부과처분 요청(법 제76조 제1항제2호)
- **공사중지** :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이행조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공사중지 명령 해당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으로 **집단민원의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 보호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훼손된 경우**
  - 기타 승인기관이 사업의 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공사중지 명령시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V. 사업자의 준수사항

## 1) 사업자 준수사항

### ■ 사전공사 금지(법 제34조)

- 협의, 재협의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금지
  - ※ 사전공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기관의 공사중지 명령 위반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사 착공, 준공, 공사중지 통보(법 제37조)

-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중지(3개월 이상)시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20일 이내 통보
  - ※ 착공 등 공사진행상황 미통보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법 제38조)

-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협의내용 이행 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의무가 승계(30일 이내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통보)
  - ※ 협의내용 이행상황 및 승계 사유 등 미통보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협의내용 이행

### ■ 협의내용의 이행(법 제35조제1항)

-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재협의내용,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포함)을 이행하여야 함

### ■ 협의내용의 이행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 이행

- 승인기관의 조치명령 미이행시 사업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 환경부장관은 공사중지, 필요한 조치명령을 승인기관에 요청 가능

### ■ 처분규정

- 협의내용 이행조치 미이행 :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공사 확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3)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법 제35조제3항)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여 20일 이내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통보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시행령 『별표5 제2호가목1 또는 나목1』의 자격 인정범위에 따름(기사, 기술사 등)
  - ※ 관리책임자 미지정 또는 미통보(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위탁(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위탁관리 가능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 한정)분야로 등록한 자
  - ※ 관리책임자는 여러 사업장에 중복 지정 가능(단, 협의내용의 적정 관리가 가능한 정도)
  - ※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가능한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

## 4)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관리사항

-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협의내용 이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법정 서식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시기 및 협의내용의 기록·관리의 적정성
-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실시 여부
  -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조사지점, 조사시기, 조사횟수 등의 이행
  - 조사자(조사대행자) 적격여부(평가대행자 등록업체)
  - 조사결과 환경기준(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등) 준수 여부 및 필요한 대응조치 시행 여부
-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 공사 착공, 준공, 공사중지 시 통보여부,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변경) 사실 통보 여부 등

## 5) 협의내용 관리대장

###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 보관(법 제35조제2항)

- 공사현장의 주된사무실(공사현장이 2이상인 경우 공사 현장별)에 협의내용 및 이행여부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 ※ 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보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방법

- 평가서 상의 저감방안, 조건부 협의내용의 이행사항, 이행시기 등의 구체적인 계획 및 이행실적 기록 · 관리
-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대장관리 및 사진, 도면 등 관련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수시로 기록관리 및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협의내용 관리 대장 정리(다음달 10일까지)
- ※ 사업장 대표 등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

## 6) 사후환경영향조사

### ■ 사후환경영향조사(법 제36조)

- 사업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에 통보
  - ※ 전부 미실시(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일부 미실시(1,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한 내 미통보(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치사항(법 제36조제2항) 및 제출시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 ※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에 미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시(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환경부고시 제2018-50호, 3.30]